24, 12, 16, 오후 2:30 인쇄

미귀국자 제재안내

미귀국자 제재안내

개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음

허가기간만료 안내

허가기간만료 통지

예고시기: 허가기간만료 90일전 **안내대상**: 1년이상 장기체류자

안내서(우편 또는 전자우편) 송부: 본인 및 부모 또는 그 밖의 가족

미귀국자의 처리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30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4조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고발

벌칙 등 제재 내용

3년이하의 징역(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79.12.31. 이전출생자는 35세까지)

인적사항 등 인터넷 공개

입국 시 출국금지

유효한 여권의 반납 및 효력상실 등

국외여행허가 제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입영·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의무를 감면(연기 또는 면제) 받은 사람으로서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체재 등의 사유로 병역연기(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사회복무요워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해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

24. 12. 16. 오후 2:30 인쇄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